

점포 사용대차계약서

※상기 당사자간에 아래 점포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목적물

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목적물건을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·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.

[목적물건]

구 분	물건정보
점포의 표시	주 소 :

제2조 기간

본 사용대차기간은 별도로 갑·을간에 년 월 일자로 체결한다.

제3조 용도

을은 본건 점포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그 용법에 따라 사용·수익하여야 하며, 제 3 자에게 사용·수익시킬 수 없다.

제4조 공과금부담

을은 의 세를 부담한다.

제6조 손해보상

을이 본 계약조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했을 때는 이로 인하여 갑이 받은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.

제7조 해제권의 유보

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8조 원상회복

기간이 만료하고,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을은 즉시 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명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. 명도지체의 경우 을은 갑에게 지연 1일에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, 서명날인 후 각자 1통을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대주 '갑' 성 명 (인)
주 소

대주 '을' 성 명 (인)
주 소